

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주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, 통·리장, 읍·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제조항을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. (안 제5조제1항)

□ 검토의견

-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거주지 읍·면·동장의 추천만을 받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